

II. FAQ

Q1.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변 내 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은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 변 내 용>

-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금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 1600-3190, 홈페이지)

Q3. 우리집은 어디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내 용>

- 현재 자택에서 사용하시는 난방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도시가스 : 지역 관할 도시가스사업자
 - 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권역 거주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권역 외 거주 → 세대 소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 * 지원신청 가능 거주지 명단은 집단에너지협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 세대별 난방형태를 확인하시고, 지원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왜 시행하는 것인가요?

<답 변 내 용>

- 지역난방의 주연료인 LNG 요금인상으로 인하여 난방요금 단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 등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이거나 지난 동절기 난방비를 소급하여 지원해드립니다.

Q5.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내 용>

- 별도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공기업 등(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공급사의 공급권역을 제외한 민간 지역난방공급사가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초본 상 지원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기간('24년1월 ~ '24년2월)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 해당월의 1/2 이상 거주하신 분은 해당월(1개월) 난방비 전액을 지급하며 1/2 미만 거주하신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거주하시는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는 세대 소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번호는 집단에너지협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Q6.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내 용>

- 지원기간 '24년1월부터 '24년2월까지 사용한 2개월간 난방비입니다.
- 청구일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지원기간 사용하신 세대 난방비는 그 다음달 관리비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24년2월 ~ '23년3월 세대 관리비 고지서의 난방비(1월·2월 사용분)가 지원대상 범위입니다.

Q7. 거주지가 지역난방공사 공급권역에 해당하는지 그 외 공급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02-2021-1765,176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8.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난방비 지원금은 지원대상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거주하시는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는 세대 소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협의회 대표번호는 집단지너지협회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Q9. 지금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난방비를 얼마 더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24년1월~'24년2월 중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신 경우, 그 금액만큼은 지원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난방비 지원금액은 지원기간(2개월) 동안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금액과 집단에너지협회가 지원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여 최대 59만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만큼 지원합니다.

<예시> 정부로부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30만4천원 받는 경우 난방비 지원 한도
☞ 59만2천원(한도)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30만4천원) = 28만8천원(잔여 지원금액 한도)

Q10.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고 있는데, 난방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4년1월 ~ '24년2월

Q11.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입니다.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세대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를 59만2천원 한도(에너지바우처 포함)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4년1월 ~ '24년2월
- 주민등록초본 상 지원기간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12.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가 59만 2천원 보다 작습니다.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24년 1월부터 '24년 2월까지 사용한 난방비 만큼 지원합니다.
- 난방비에는 기본요금, 사용요금, 급탕비, 공동난방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지원기간('24년 1월~'24년 2월) 동안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포함한 세대난방비가 59만2천원 보다 적더라도, 최대한도인 59만2천과 실제 난방비간 차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1>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사용 후 세대난방비 2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 잔여한도 28만8천원) 20만원 지원

<예시2>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사용 후 세대난방비 3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 잔여한도 28만8천원) 28만8천원 지원

<예시3>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없거나 미수급자이면서 난방비 2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20만원 지원

<예시4>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없거나 미수급자이면서 세대난방비 6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59만2천원 지원

Q13.

지원기간 동안 사용한 난방비가 59만 2천원 보다 많습니다. 초과한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24년 1월부터 '24년 2월까지 사용한 난방비 만큼 지원합니다.
- 난방비에는 기본요금, 사용요금, 급탕비, 공동난방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지원기간('24년 1월~'24년 2월) 동안 세대난방비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59만2천원 보다 많으면 지원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1>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사용 후 세대난방비 2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 잔여한도 28만8천원) 20만원 지원

<예시2>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사용 후 세대난방비 3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 에너지바우처 30만4천원 = 잔여한도 28만8천원) 28만8천원 지원

<예시3>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없거나 미수급자이면서 난방비 2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20만원 지원

<예시4> '24.1월~'24.2월 에너지바우처 사용금액 없거나 미수급자이면서 세대난방비 60만원 나온 경우
 ☞ (난방지원 한도 59만2천원) 59만2천원 지원

Q14.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였으나, 현재 자격이 상실된 경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현재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도, 지원 신청자가 '24년 1월부터 '24년 2월 동안 에너지바우처 사용이력이 있다면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15.

에너지바우처로 지원기간('24년1월~'24년2월)동안 난방요금을 전액 지원받아서, 세대 난방비가 0원인데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난방비 지원금액은 지원기간('24년1월~'24년2월)에 실제 지불하신 난방비 기준으로 최대 59만2천원까지 지원되며, 지원기간('24년1월~'24년2월)동안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제외합니다.
- 최대한도인 59만2천원과 실제 난방비간 잔액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16.

난방비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답 변 내 용>

- 신청기간('24.4.17.~'24.5.31.) 내 구비서류(5종)를 지참하시어 민간 지역난방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난방비 신청이 가능한 사회복지관 명단은 집단에너지협회 홈페이지 혹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7.

기초생활수급자라 수급자 통장만 소지하고 있어 다른 지원금 입금이 불가합니다.이럴 땐 어떻게 지원금을 받을까요?

<답 변 내 용>

- 지원금을 받으실 통장을 새로 개설하셔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가족 분의 통장사본으로 제출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Q18.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및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변 내 용>

- 신청기간('24.4.17.~'24.5.31.) 내 제출 필요서류를 지참하시어 민간 지역난방 공급사 공급권역의 시·군·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24년 3월 관리비 청구서를 수령받은 이후(4월17일)부터 5월말까지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이후 자격, 거주기간, 세대의 난방요금 등을 확인한 후 신청하신 대상자 계좌로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6월 21일에 신청결과를 공고하고, 7월 19일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 신청 결과공고 방식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일괄 진행하며, 접수 시 일정 안내 예정

Q19. 신청(사회복지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내 용>

- 구비서류는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② '24년2월~3월 관리비 고지서('24년1월~'24년2월 난방비 반영분),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통장사본 각 1부씩 입니다.

Q2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 변 내 용>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90일 이내 발급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2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와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 변 내 용>

-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는 1가구에서 다른 세대원이 같은 기간의 난방비 고지서로 중복수급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이면 시도협의회에서 사업비 받을 때 '0원 통장'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 변 내 용>

- 1차로 지원받은 기관이(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차 기관(시도협의회)에 배분금을 지원하는 경우 '0원 통장'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비에 대한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Q23.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지원대상 지역 리스트에 없거나 주소가 다를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 변 내 용>

- 해당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지원대상 지역 리스트에 없거나 주소가 다를 경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65,1766)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24.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내 용>

- 주민등록상 지원기간('24년 1월~'24년 2월)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지원기간('24년 1월~'24년 2월) 내 전출입 세대의 경우, 해당월의 1/2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만 해당월의 난방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Ⅲ. 기관별 문의처

① 한국집단에너지협회_지역난방

-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연락처 : 02-6959-8948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연락처 : 02-2021-1762
 - 상기 연락처는 각 사회복지협의회 명단 확인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비상 연락망이며, 난방비 지원신청 접수·민원응대 관련 문의는 공급구역별 사회복지협의회 문의처로 안내 요망

② 한국지역난방공사_지역난방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1688-2488

③ 한국가스공사_도시가스

제도문의

지역별 가스공사 연락처



지역	한국가스공사	전화번호
한국	본사	053-670-0238
서울	서울지역본부	02-2657-1029
인천	인천지역본부	032-453-6625
경기	경기지역본부	031-400-7219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760-6692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대전충청지역본부	042-229-3432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850-3822
광주,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0-1129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850-1867
부산, 울산, 경남	부산경남지역본부	055-330-7818
제주	제주LNG본부	064-766-3624

신청문의

지역별 도시가스사 연락처



지역	도시가스사명	전화번호
서울, 경기	코원에너지서비스(주)	1599-3366
	(주)에스코	1544-3131
	서울도시가스(주)	1588-5788
서울	(주)데프에스	1566-6116
	(주)귀뚜라미에너지	1670-4700
인천, 경기	(주)삼천리	1544-3002
	인천도시가스(주)	1600-0002
부산	부산도시가스(주)	1544-0009
대구, 경북	대성에너지(주)	1577-1190
광주, 전남	(주)해왕에너지	1544-1115
대전, 충남	CNCITY에너지(주)	1666-0009
울산, 경남	(주)광동도시가스	1577-8181
	강원도시가스(주)	1599-2232
강원	참빛도시가스(주)	
	참빛원주도시가스(주)	1899-9100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영남	명성파워그린(주)	033-332-6430

*도시가스사별 공급지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신청문의

지역별 도시가스사 연락처



지역	도시가스사명	전화번호
충북	참빛충북도시가스(주)	1899-9100
세종, 충북	충청에너지서비스(주)	1599-3131
세종, 충남	J(주)	1544-0041
충남	(주)미래엔서해에너지	1577-6580
전북	군산도시가스(주)	063-440-7700
	전북도시가스(주)	063-240-7700
전남	전북에너지서비스(주)	1599-3833
	목포도시가스(주)	1899-6390
경북	전남도시가스(주)	1599-0887
	대화도시가스(주)	1661-6080
경남	영남에너지서비스(주)(구미)	1599-5005
	영남에너지서비스(주)(포항)	1800-0098
	대성창정에너지(주)	054-850-1100
제주	서라벌도시가스(주)	1544-5916
	경남에너지(주)	1661-4000
제주	(주)지메시	1577-1169
	(주)제주도시가스	1600-3437

IV. [참 고] 지역난방 공급권역 표

1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지원

구분	지역	사업자	열공급구역(시,군,구)
한국집단에너지협회 지원권역	서울	나래에너지서비스	강동구, 송파구
		GS파워	구로구
		삼천리	금천구
		대성산업	구로구
	경기	GS파워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의왕시, 안양시, 부천시
		나래에너지서비스	하남시, 성남시
		안산도시개발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청라에너지	김포시
		디에스파워	오산시
		삼천리	광명시, 안양시
		휴세스	수원시, 화성시
		별내에너지	남양주시, 구리시
		대륙발전	의정부시, 양주시
		평택에너지서비스	평택시
	인천	GS파워	계양구, 부평구
		청라에너지	서구
		인천종합에너지	연수구, 미추홀구
		미래엔인천에너지	남동구, 연수구
	충남	내포그린에너지	홍성군, 예산군
		석문에너지	당진시
		제이비	전안시, 아산시
	대전	대전열병합발전	유성구, 대덕구, 서구
		씨엔씨티에너지	서구, 유성구
	강원	춘천에너지	춘천시
	경북	포스코오앤엠	포항시
	경남	무림파워텍	진주시
	대구	대구그린파워	동구
		대성에너지	달성군
	부산	부산도시가스	강서구
		부산정관에너지	기장군
	전북	전북집단에너지	익산시
		OCI SE	-
	광주	한국씨이에스	서구
수완에너지		북구, 광산구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별도 지원하는 일부 공기업의 공급권역 제외

2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

구분	지역	열공급구역(시,군,구)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권역	서울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경기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파주시, 평택시
	세종	세종시
	충북	청주시
	경남	양산시, 김해시
	대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전남	나주시